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06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박민규
안호영 · 김동아 · 한민수
윤후덕 · 임호선 · 서미화
이연희 · 유동수 · 문진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누구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등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0조의3(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u> 누구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등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1.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u> <u>2. 공동주택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u> <u>3.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u>
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과태료) ① ~ ④ (생략)	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과태료) ① ~ ④ (현행)

략) <u><신 설></u>	과 같음) <u>⑤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⑥</u> -----<u>제5항</u>----- ----- ----- ----- -----.
-------------------------------------	---